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2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제이엠씨자산운용(舊.㈜알디자산운용)
임 원	甲

2. 조치내용

○「지배구조법」 제10조에 따라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甲에 과태료 10.8백만원,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㈜제이엠씨자산운용(舊.㈜알디자산운용)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

□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,

○ ㈜제이엠씨자산운용(이하 '회사')의 甲은 20xx.xx.xx.부터 20xx.xx.xx.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, ㈜A(20xx.xx.xx.~20xx.xx.xx.)와 ㈜B(20xx.xx.xx.~20xx.xx.xx.)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

나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회사는 ㉮ 및 ㉯ 펀드의 집합투자규약(신탁계약서)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「벤처기업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(이하 '벤처신주비율')을 자산총액의 □% 이상,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(이하 '벤처투자비율')을 자산총액의 □% 이상으로 하고,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,

- ㉮펀드는 20xx.xx.xx.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,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의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□%에 미달(총 ○회),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□%에 미달(총 ○회)하였으며,

- ㉯펀드는 20xx.xx.xx.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,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의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□%에 미달(총 ○회)하는 등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○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 제1호
「지배구조법」 제10조(겸직제한) 제1항